

9.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案)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5-93號 1995. 4. 13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택지의 취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택지취득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기타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중 시장용 토지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나대지로 보았으나 시장용 토지도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므로 나대지에서 제외함.
- 나. 자동차운수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및 위험물취급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택지취득허가기준면적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

다. 주택건설분양용 택지를 취득한 경우의 처분의무기간을 사업준비 및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 분양에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라. 택지취득후 이용·개발의무기간중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공익사업·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이용·개발하지 못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마. 주택 또는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토지초과이득세법·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과 일치시켜 법령간 형평성을 유지함.

바. 이 개정안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5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국장, 504-91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